對 外 秘

현안 관련 말씀 자료

2015. 7. 기획조정실

1. 과거 왜곡의 광정

▣ **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**

● 1과거 정권의 '적폐 해소' ⇨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

⁝ 아래 ❶과거사 정립, ❷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

● 2미래지향적인 '경제부흥'과 '국민행복' ⇨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·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

⁝ 아래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, 4대 부문 개혁 중 ❹노동, ❺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

▣ **❶과거사 정립**

●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·정파간 소모적 대립·논쟁의 결과,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⇨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

●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

⁝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

☑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
▶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,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

☑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

▶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**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**

☑ 대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4다234155 판결

▶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

● 대통령긴급조치 사건

⁛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**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**함

☑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

▶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**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**

☑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824 판결

▶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**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**

▣ ❷자유민주주의 수호

●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**단호히 대처** ⇨ **혼돈·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** 노력

● 이석기 전 의원 사건

⁛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**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**

☑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

▶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**내란선동죄로 인정**함

●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

⁛ **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**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**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**을 걺

☑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2836 판결

▶**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**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

이 아니라,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.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, 피고인이 **중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·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**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·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·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▣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

-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⇨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

- 한편, 첨예한 갈등·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**과정·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**하여 **경제에 악영향**을 미침 ⇨ 대법원은 **공개변론 중계방송**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

- 통상임금 사건

  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**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(약 38조 원으로 추산됨)을 최대한 고려**하여,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**적절한 결론을 제시**함

  - 특히 **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**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**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**를 기울임

☑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
▶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, **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**시킴

- 키코 사건

  - 금융기관과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**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**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**양측이 승복**할 수 있는 결론 도출

☑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

▶키코 통화옵션계약이 **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**

●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

-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**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철도산업발전방안' 에 따라 추진**된 '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' 를 **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·갈등 상황을 종식**시킴

> ☑ **2013. 12. 27. 대전지방법원**
>
> ▶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**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**

▣ ❹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

●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⇨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**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**을 위하여 노력

● KTX 승무원 사건

-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**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**함

> ☑ **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96922 판결**
>
> ▶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**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**하고, **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**

● 정리해고 사건

-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**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**한데, **선진적인 기준 정립**을 위하여 노력함

> ☑ **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3735 판결**
>
> ▶악기 제조업체인 **콜텍**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
>
> ☑ **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14517 판결**
>
> ▶**쌍용차**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,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,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

● 철도노조 파업 사건

- **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**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

> ☑ **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468 판결**
>
> ▶**철도공사**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,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**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**

▣ ❺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

●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사건이 다수 존재함 ⇨ 역시 **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**하는 방향을 모색함

● **전교조 시국선언 사건**

-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, **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**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

> ☑ **대법원 2012. 4. 19.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**
>
> ▶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**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**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

● **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**

-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**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**과,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**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**하기로 함

> ☑ **대법원 2015. 6. 3.자 2014무548호 결정**
>
> ▶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**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**

[끝]